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5. 25 선고 2021가단1212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F

변 론 종 결 2022. 4. 27.

판 결 선 고 2022. 5. 25.

주 문

1. 피고들과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0. 6.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0. 10. 22. 접수 제662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G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법원은 2013. 11. 29. ‘G는 원고에게 16,106,120원과 그 중 7,159,786원에 대하여 2013. 9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(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45130호),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G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피고 C 50/100 지분, 피고 D 30/100지분, 피고 E 20/100지분에 관하여 각 2020. 10. 6.자 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0. 10. 22. 접수 제662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G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원고가 G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.

나. 사해행위 여부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G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원고를

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G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.

다.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집안의 선산으로 분묘 수호 등을 위하여 증여받은 것일 뿐이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이 선산이라거나 분묘 수호 등의 필요로 증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라고 볼 수는 없고, 달리 피고들이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라.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G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김재남

별지